의안번호	2209263
의 뢰 인	윤상현의원
회 답 일	2025.4.11.
추계번호	24D18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시나리오1)** 해사법원 청사 임차 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02억 5,300만원

○ **(시나리오2)**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활용 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175억 8,8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해사법원 설치 (인천)	시나리오1	인건비	2,872	2,943	3,016	3,091	3,168	–	15,090
		기본경비	247	253	259	265	271	–	1,295
		임차료	617	617	617	617	617	–	3,085
		법정등시설비	539	–	–	–	–	–	539
		자산취득비	244	–	–	–	–	–	244
		합계	4,519	3,813	3,892	3,973	4,056	–	20,253
	시나리오2	인건비	–	2,943	3,016	3,091	3,168	3,246	15,463
		기본경비	–	253	259	265	271	278	1,326
		법정등시설비	–	550	–	–	–	–	550
		자산취득비	–	249	–	–	–	–	249
		합계	–	3,995	3,275	3,356	3,439	3,524	17,5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별표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해사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이고 관할구역은 전국으로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별표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해사법원(인천광역시 소재)의 규모는 해사사건의 수와 유사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한 후,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추정함

○ **(법관)** 해사사건 수, 해사법원 심판권의 범위(해사민사·행정사건의 1심, 해사민사·행정사건의 항소심 등)[1] 등을 고려할 때, 합의재판부 2개와 단독재판부 2개의 설치·운영에 법관 9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해사·해상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의 해사사건의 수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서울고등법원	18	13	20	18	15	24	16	11	24	17
부산고등법원	8	3	8	11	3	5	7	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1	14	31	30	38	28	39	39	54	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포함)	47	55	42	50	39	40	59	42	73	65
합계	94	85	101	109	95	97	121	96	160	123

주: 본 해사사건의 수는 서울과 부산의 4개 법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고,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도 해사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건 수는 더 많을 것임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3] 재판부 구성 및 필요 법관의 수

(단위: 명)

구분	재판부 구성	인원
법원장	-	1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합의재판부 2개 (1개 항소심 겸임)	6
단독판사급	단독재판부 2개	2
합계	총 4개 재판부	9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261호)
제28조의7(심판권) ① 해사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1.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
가. ~ 다. (생 략)
2.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
가.·나. (생 략)
3.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해사법원의 항소부는 해사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법원공무원)** 유사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법관 대비 법원공무원 비율(1:4.28)을 적용할 때, 해사법원의 설치에 따른 법원공무원 필요인력은 총 39명으로 추정됨

[표 4] 법관 정원 대비 필요 법원공무원의 수

(단위: 명)

구분	법관	법원공무원	합계
특허법원	18(1)	77(4.28)	95
해사법원	9(1)	39(4.28)	48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판사는 증원이 없고[2] 법원공무원 39명을 증원[3]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해사법원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법정 및 조정실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해사법원의 설치·운영 비용의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등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사법원의 청사를 임차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청사를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추계하되 추계기간을 5년으로 함

○ (시나리오1): 해사법원의 청사 임차, 추계기간 2027~2031년

○ (시나리오2):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8년 개원 예정) 활용, 추계기간 2028~2032년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2025.1.7.)으로, 판사의 정원을 2025년 90명, 2026년 80명, 2027년 70명, 2028년 70명, 2029년 60명 등 총 370명 증원할 예정임

3) 판사의 증원에 비례하여 법원공무원의 수도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사·해상전담재판부 소속 법원공무원의 해사법원으로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해사법원의 인건비는 법원공무원 증원인력의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법원공무원 증원인력에 직급별 1인당 평균 연봉액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5.4.4.)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4] 적용

○ **(기관부담금)** 법원공무원의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5.4.4.)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5] 적용

❑ 해사법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관의 수와 법원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5] 해사법원의 직급별 정원(안): 2025.4. 기준

(단위: 명)

구분		원장실	판사실	사무국	총무과	(가칭)해사과	보안관리대	합계
법관	법원장	1						1
	부장판사		6					6
	판사		2					2
	소계	1	8					9
법원 공무원	3급			1				1
	4급				1	1		2
	5급				1	2		3
	6급					1		1
	7급				3	4		7
	8급				4	3		7
	9급	1		1	7	5	4	18
	소계	1		2	16	16	4	39
합계		2	8	2	16	16	4	48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상승률	3.0%	2.4%	2.4%	2.4%	2.4%	2.4%	2.4%

5)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기관부담 요율	-	-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 2024년 기준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직급별 연봉액: 2024년

(단위: 원)

구분	직급	급여구분	1인당 평균 연봉액
법관	법관	연봉제	131,079,409
법원공무원 (공안직)	1급	연봉제	154,599,000
	2급	연봉제	140,256,000
	3급	연봉제	129,600,800
	4급	연봉제	116,324,810
	5급	연봉제	98,143,414
	6급	호봉제	80,914,516
	7급	호봉제	74,258,001
	8급	호봉제	50,521,375
	9급	호봉제	41,088,234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해사법원의 설치에 따른 법원공무원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7] 해사법원의 설치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건비 추정: 2027~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시나리오1	보수	3급	140	143	147	150	154	–	734
		4급	251	257	263	270	276	–	1,317
		5급	318	326	333	341	350	–	1,668
		6급	87	89	92	94	96	–	458
		7급	561	575	589	603	617	–	2,945
		8급	382	391	401	410	420	–	2,004
		9급	799	818	838	858	878	–	4,191
		소계	2,538	2,599	2,663	2,726	2,791	–	13,317
	기관부담금		333	343	354	365	376	–	1,771
	합계		2,872	2,943	3,016	3,091	3,168	–	15,090
시나리오2	보수	3급	–	143	147	150	154	158	752
		4급	–	257	263	270	276	283	1,349
		5급		326	333	341	350	358	1,708
		6급	–	89	92	94	96	98	469
		7급	–	575	589	603	617	632	3,016
		8급	–	391	401	410	420	430	2,052
		9급	–	818	838	858	878	899	4,291
		소계	–	2,599	2,663	2,726	2,791	2,858	13,637
	기관부담금		–	343	354	365	376	388	1,826
	합계		–	2,943	3,016	3,091	3,168	3,246	15,463

주: 인건비는 법원공무원의 보수와 기관부담금을 합산한 것이며, 법관의 보수와 기관부담금은 제외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본경비

❑ 해사법원의 기본경비는 대법원의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1,393,531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0,168백만원)의 비율(6.47%)을 적용

[표 8] 해사법원의 기본경비 추정: 2027~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시나리오1	보수	법관	1,274	1,305	1,336	1,368	1,401	–	6,684
		법원공무원	2,538	2,599	2,663	2,726	2,791	–	13,317
		소계	3,812	3,904	3,999	4,094	4,192	–	20,001
	기본경비 비중		6.47%	6.47%	6.47%	6.47%	6.47%	–	–
	합계		247	253	259	265	271	–	1,295
시나리오2	보수	법관	–	1,305	1,336	1,368	1,401	1,435	6,845
		법원공무원	–	2,599	2,663	2,726	2,791	2,858	13,637
		소계	–	3,904	3,999	4,094	4,192	4,293	20,482
	기본경비 비중		–	6.47%	6.47%	6.47%	6.47%	6.47%	–
	합계		–	253	259	265	271	278	1,326

주: 전체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의 비중(6.47%)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관의 보수를 포함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임차료 (시나리오1만 해당)

❑ 해사법원의 청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는 해사법원의 공급면적에 임대료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관리비는 임대료의 50%로 가정함

○ **(공급면적)** 해사법원의 정원(법관 9명, 법원공무원 39명)에 전국 6개 지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법원종합청사의 1인당 사무공간 면적(53㎡)과 인천지역 오피스 전용면적비율(62.3%)을 적용하여 공급면적(4,082㎡) 추정

○ **(월 임대료)**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발표된 인천지역 오피스 기준 8,400원/㎡ 적용

– 임대료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6]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

6) 인천지역 오피스 임대료 현황: 2020년 4분기~2024년 4분기

(단위: 천원/㎡)

분기	2020	2021	2022	2023				2024			
	4Q	4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월 임대료	8.6	8.3	8.4	8.3	8.4	8.4	8.4	8.4	8.4	8.4	8.3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4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25.1.31.)

[표 9] 해사법원의 임차료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나리오1	임대료	411	411	411	411	411	2,055
	관리비	206	206	206	206	206	1,030
	합계	617	617	617	617	617	3,0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법정 및 조정실 시설비

❑ 해사법원의 법정(2실)과 조정실(2실) 시설비(공사비, 자산취득비)는 최근 고양지원 법정 증설공사와 대전법원종합청사 조정실 설치공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법정 및 조정실 시설비는 해사법원의 설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유지보수비는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법정)** 2022년 고양지원 법정 증설공사에 소요된 시설비 단가(153,067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5.4.4.) 소비자물가상승률[7] 적용

○ **(조정실)** 2024년 대전법원종합청사 설치공사에 소요된 시설비 단가(91,877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5.4.4.)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10] 법정 및 조정실 시설비 추정: 2027~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시나리오1	법정	344	–	–	–	–	–	344
	조정실	195	–	–	–	–	–	195
	합계	539	–	–	–	–	–	539
시나리오2	법정	–	351	–	–	–	–	351
	조정실	–	199	–	–	–	–	199
	합계	–	550	–	–	–	–	5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자산취득비

❑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해사법원의 자산취득비는 해사법원의 정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7)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3%	1.9%	2.0%	2.0%	2.0%

○ 자산취득비는 해사법원의 설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정원)** 법관 9명, 법원공무원 39명 등 총 48명

○ **(자산취득비 단가)** 2027년 기준 5,080천원. 2028년 기준 5,182천원

[표 11] 법정 및 조정실 시설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시나리오1	정원	48	–	–	–	–	–	–
	단가(천원)	5,080	–	–	–	–	–	–
	합계	244	–	–	–	–	–	244
시나리오2	정원	–	48	–	–	–	–	–
	단가(천원)	–	5,182	–	–	–	–	–
	합계	–	249	–	–	–	–	2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시나리오1)** 해사법원 청사 임차 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02억 5,300만원

○ **(시나리오2)**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활용 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175억 8,800만원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해사법원 설치 (인천)	시나리오1	인건비	2,872	2,943	3,016	3,091	3,168	–	15,090
		기본경비	247	253	259	265	271	–	1,295
		임차료	617	617	617	617	617	–	3,085
		법정 등 시설비	539	–	–	–	–	–	539
		자산취득비	244	–	–	–	–	–	244
		합계	4,519	3,813	3,892	3,973	4,056	–	20,253
	시나리오2	인건비	–	2,943	3,016	3,091	3,168	3,246	15,463
		기본경비	–	253	259	265	271	278	1,326
		법정 등 시설비	–	550	–	–	–	–	550
		자산취득비	–	249	–	–	–	–	249
		합계	–	3,995	3,275	3,356	3,439	3,524	17,5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해사사건의 수와 유사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사례를 참고하고, 판사 증원 없이 법원공무원만 증원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831	jsy@na.go.kr